

기 안 용 지

분류기호	도시 650-4 ~ 25		(정회원호 342)	전 축 구 경 3 조 / 향 축 관 경 관 사 향	
처리기간			도시 정비, 국장		
시행일자	26. 3.				
보존년한					
보 조 기 관	도시 정비 과장	국장	법률감찰관 (공회연설사)		
	도시 정비 과장	국장			
기 안 체 일자	26. 3. 11 김 성정		조		
경 우 신 참	각 안 침조	발 신	통 제	검열 1976. 3. 15 분서도서관	

제 목 환지 예정지 계획 변경 공고

제 1 항 내부 결재

1. 앞지에서 시현을 미 청용도지 구획 정리 지구내 일부
도지 청용 24P-26 도지 소유자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 누락에
대한 지정 요청이 주우로 접수 되며 내용 조사 하라.

2. 상기 도지는 지구계에 연락 도지로서 양호 지구
계 분할 작으로 인한 것으로서 별첨 양호 지구에 있어
폐지 및 이전을 해소함에 가하고 사로하여 도지 구획
정리 사업에 제49호 및 제50호 규정에 의거 환지 예정지
계획 변경하고 동법 제33호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암
해 도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표 공고 하여
제결을 바란다.

3. 본 공고의 신문지자는 생략하고 시보에 제재하여
여 도지 소유자에게는 별도 통보 하지 합니다.

제 2 항. 공고판

0201-1-8A (경)
1969. 12. 10. 수 인

3504

190mm × 268mm 인쇄용지(2급) 60g/m²
소 낸 가 속 월 (92 - 0 4 3 6)

공고안심사 1976. 7. 15. 제 6. 2. 3
심자

서울특별시 공고 제 6. 2. 3

도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에 한지 2013 일부 평정 공고

공고

1. 서울특별시 창동로지구획 정리 지구에 일부로
지역 대하여 한지 제작을 일부 평정 하여 도지 구획
정리 사업법 제47조 및 동법 제53조와 동법 제33조 규
정에 대하여 공고문을 부려 14일간 공람에 공고합니다.

2. 한지 제작 평정 관계로서는 서울특별시 도시
계획과에 배치하고 도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
에게 부이기 한다.

3. 서류 송달은 도지 소유자에게 평정 송달 할 것
이나 이 수령 되는 도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대하여
는 이 공고로 가를 한다.

26. 3.

서울특별시장

제3안

수신 도봉구 번동 337-2 강 대장

제 목 등지

창동 도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에 대하여 소유 도
지에 대하여 평정 공고문 사본과 같이 한지 예정지 제작
을 일부 평정 공고 하여기 일회 쓰리으니 공람 하시기 바
랍니다.

한부 공고문 사본 1파.

제 4안

수신 공정 실장

제 목 시설 개재의 회

1. 당시에서 시행 중인 창동 도지 구획 정리 사업지
구에 일부 도지에 대하여 한지 예정지 제작 평정을

책 광고판 사본과 같이 평점 광고 하면 아래와 같이 시장에
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광고판 사본 3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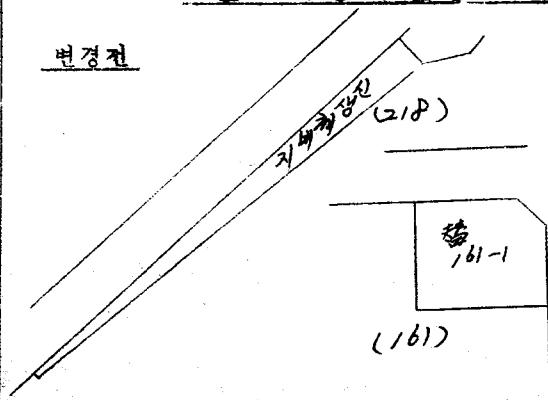
0201-1-43A (2-2)
1972. 12. 29. 수 일

서울 8500

190mm × 253mm인쇄 용지 (2급) 60g/m²
소년기술원 (92-043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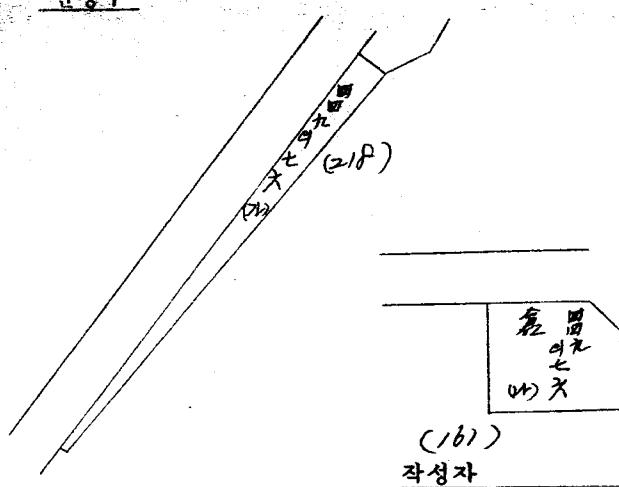
환지 예정지변경 도면

변경전



축척 1:1200

변경후



3507

환지예정지변경(불활)조서

종전의 토지 동명 지번 지번 목록	환지예정지			비고
	구 역 번호 <small>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교부</small>	변경선	변경후	
		구 역 번호 <small>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교부</small>	비고	
광 44P -16林 143		변경전 면적 2.7 5.0 57.6	변경후 3P 7 3P 4	3P 7 3P 4 2.7
광 44P -16林 143		3P 7		
광 44P -16林 143		5P 4		